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4,321,767	13,329,653
일반회계	401,050,168	12,031,505
특별회계	43,271,599	1,298,148
기타특별회계	43,271,599	1,298,1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746,626	322,399
수질개선특별회계	17,234,843	517,0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6,997	12,810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4,371,381	131,141
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	500,000	15,000
하수도특별회계	9,991,752	299,75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00,000천원이고, 재난·재해예비비는 1,484,47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